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4월 2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김**	김** 1968-10-13	강원도 속초시 청대로	무단전출
박**	박** 1980-04-02	강원도 속초시 선사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79-01-07	강원도 속초시 선사로1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장 순해 문의전화 : 033-631-1406)

2014년 04월 15일

조양동장

